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

2024. 12. 31.



목 차

Ⅰ.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사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1
Ⅱ.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22
Ⅲ.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41

2025년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기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I.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1. 사업개요

- 끼임,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2.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업종: 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덧붙임2)
 -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덧붙임2)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제한 사유>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25년도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일반지원		신속지원 (Quick-pass)
자율신청품목*	관리품목**(전동지게차)	
상시	공모	상시
연중	별도 공고	연중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 등)

- (지원 한도)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신속지원(Quick-pass)의 경우, 당해연도 기술지원 사업별 1회 한정(보조금 신청일 기준)

-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②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③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기타각종제조업(22910),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④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2801),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소요금액*의 70% 지원

구분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신속지원(Quick-pass)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소요(신청)금액*의 70%

* 신속지원(Quick-pass): 기존 보조지원품목의 경우, 표준기준가격을 준용, 표준기준가격 미산정 품목(방호덮개, 안전난간 등)에 한하여 소요금액으로 적용(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적용)

○ (지원품목) 자율신청품목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으로 지원하되, 기존 지정품목[덧붙임]은 지원 품목 적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심사절차를 생략하여 지원

※ ①자율신청품목 중 특정 품목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 신청될 시에는 관리 품목으로 별도 지정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②이동식에어컨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는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자율신청품목으로 지원 신청이 불가함.

- (자율신청품목 지원기준) 자율신청품목은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적정’ 시에만 지원이 가능

※ 자율신청품목은 ①공단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 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②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로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

자율신청품목 보조금 지원기준	
<p>1.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장 - 산업현장에서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확보 목적(조건)과 관련된 개선 방안(①안전설비, ②작업환경, ③작업공정, ④기타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지원 ※ 예) 고위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 대체설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법적 방호조치 등</p>	
<p>2. 지원불가 제품 -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 목적(조건)에 한정하며, 소모품 성격의 품목(개인 보호구 등)은 신청불가 -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품목 중 지정품목은 신청불가(국소배기장치 등)</p>	
<p>3. 최소 신청(견적)금액 1백만원 이상일 것</p>	
<p>4. 고위험개선 자율품목 기계설비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설비인 경우, 기 안전검사 대상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p>	
<p>5. 보조금 지급기준은 공단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신청품목 특성을 감안하여 품목별(양산품, 공사품) 아래 표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결정금액 최종 산정할 수 있음</p>	
양산품	공사품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원칙이나 실거래전자세금계산서5건(거래명세표 포함) 제출 가능	원가계산(검토)보고서 필수

-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덧붙임] 참조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242.4억원
 -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4. 12. 31.(화) ~ 일선기관별 자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신청문의) 보조금 지급사업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 온라인 신청 시 「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사업장명 또는 담당자명 등의 서명은 반려 등 조치)
 -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구 분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③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해당시
⑥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해당시
⑦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덧붙임2]	해당시
⑧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해당시
⑨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자율신청품목 에 한함
⑩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자율신청품목 에 한함
⑪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	자율신청품목 에 한함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⑥의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 이외의 품목만 징구

* 가격결정 근거자료: 원가계산서,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등

6.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실거래 입증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 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고위험개선 지원품목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요청

※ 보조지원 장비에 대하여 공단의 원활한 투자완료 확인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보조 지원 장비는 공단에서 요청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 분	비고				
① 입금신청 통장 사본 각 1부					
②-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table border="1"> <thead> <tr> <th>오프라인 구매 시</th> <th>온라인 구매 시</th> </tr> </thead> <tbody> <tr> <td>(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td> <td>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td> </tr> </tbody> </table>	오프라인 구매 시	온라인 구매 시	(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오프라인 구매 시	온라인 구매 시				
(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②-2 실거래 입증서류: 입금증빙서류					
③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 검토보고서 (공사품의 경우)	해당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지급보증보험증권	(덧붙임3)				
⑥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해당시(덧붙임4)				
⑦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해당시				
⑧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⑨ 품목별「고위험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⑤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보조결정)금액 제출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4년 (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 ⑥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이상) 제출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7. 선금급 제도(요청 시)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사업의 고위험 개선 지원 품목 구입·설치를 착수하기 위하여, 선금급 제도 시행
 - 공단의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급 가능

8.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 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9. 취소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환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그 밖에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0. 기타사항

-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 (품질보증) 지원품목(100만원이상)의 품질 보증하는 제작·판매업체의 하자보증보험증권(3년2개월) 반드시 제출[덧붙임4]
-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11.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內)

- (사업개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산재예방시설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주체*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관리자
- (지원품목) 입주업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재예방시설
 - 안전보건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한 자료실 및 상담실
 - ※ 안전보건도서 등 관련자료, 자료게시대, 책상, 상담용 책상, 의자, 컴퓨터, 냉난방기
 - 안전보건 교육시설
 - ※ 빔프로젝트, 모니터, 방송장비, 책상, 의자, DVD-CD 등 교육교재, 교육용 컴퓨터, 체험교육설비, VR 등 가상체험 설비, 냉난방기
 -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 ※ 헬스장, 탁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수영장, 에어로빅실 등, 냉난방기
 - 목욕·샤워시설, 오염물 세척 등을 위한 세탁시설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공동휴게시설
- (지원한도)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당 최대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 신청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 (선지급) 지급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선지급 가능

※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은 "선금급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6년(사후관리기간(5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재정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
-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신청자가 "사업주단체" 또는 "개별사업주"일 경우에 한하여 제출)
 - ③ 견적서 등 보조신청금 산출내역서
 - ④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신청자격 대표 자필 서명)
 - ⑤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 ⑥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자료 등
 - ⑦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매칭비용 부담방안, 전문 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
 - ⑧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등기부등본, 임차: 임대차계약서)
 - ⑨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 ① '24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 ③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장별 예측 위험도 - 산재발생 위험률 0.95점 이상인 기업
- ④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
- ⑤ 사고사망 고위험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산업용 리프트 전체 교체 사업장

선정 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공통적용 항목		최대 70점					
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점	최근 공식통계 상사근로자수 기준				
② 최초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사업장		10점					
③ 사고사망 위험업종		최대 25점	'24년 공식통계 기준 소업종 단위배점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10배수 이상	5~10배수 이내	2~5배수 이내	1~2배수 이내	0.5~1배수 이내		
배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④ 최근 3년간('22 ~ '24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최대 10점	'22~24년 공식통계 기준				
구분	3년			2년	1년		
배점	10점	7점	4점				
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최대 10점	※ 선정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 부여				
구분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80% 이상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0% 초과 20% 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⑥ 고용위기 지역('25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5점					
⑦ 「산단대개조」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5점					
■ 자율활동 우수항목		최대 30점					
⑧ KOSHA-MS 인증 사업장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15점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10점	각 2점씩 단, 우수항목 중복시 최대 10점으로 한정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정)서 제출 시에만 점수 부여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부여				
* ①노사문화 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NCS 기업활동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 ⑦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⑧기업 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인증) ⑩여름 휴가분산 우수기업							
⑩ 아래의 사업에 참여사업장		5점	'24, '25년도 사업 참여사업장				
①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업체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③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세가지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							
계		최대 10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

Q.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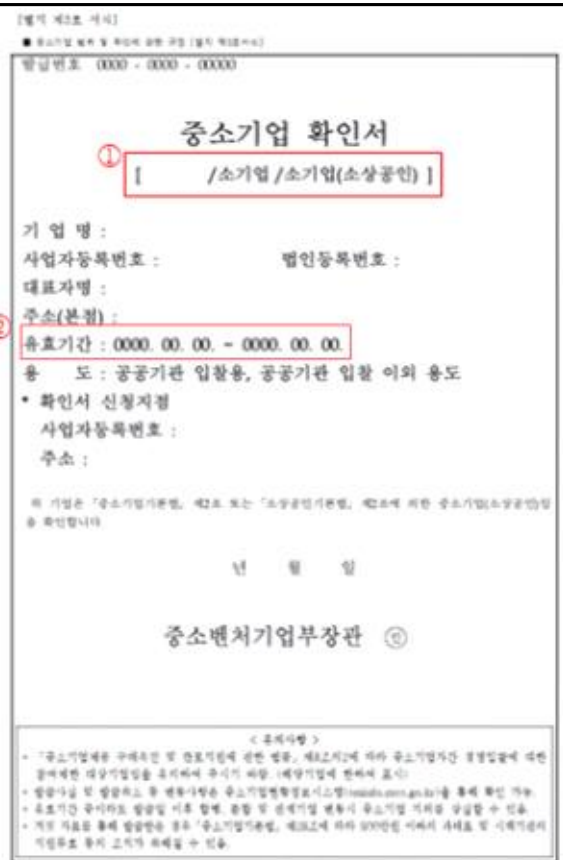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으로 적용
 ※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5.9.30.(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보험기간: '25.9.30. ~ '29.9.29.
-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REDACTED]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REDACTED]	피보험자	122-82-04898 안전보건공단
보험가입금액	[REDACTED] W [REDACTED]	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납
보험기간	2025년 9월 30일 ~ 2029년 9월 29일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REDACTED] 계약기간 [REDACTED] 계약체결일자 [REDACTED] 계약금액 [REDACTED]		
	플린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2025년 9월 30일 ~ 2029년 9월 29일까지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5.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5.6.16. 경우 '25.6.16. + 3년 2개월 => '25.6.16. ~ '28.8.15.
 -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25.6.2. 발행 시 '25.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5.6.2. ~ '28.8.1.
-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
-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h3 style="margin: 0;">하자보증보험증권</h3> <p style="margin: 0;">(인터넷 발급용)</p>			
증권번호	계 []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납
보험기간	2025년 6월 16일부터 2028년 8월 15일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20%;"> <p>[주계약내용]</p> <p>주계약명</p> <p>담보기간</p> <p>계약세금일자</p> <p>계약금액</p> <p>보증금율</p> </div> <div style="width: 80%;"> <p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주요한 사업안전보장책의 공적추진 역할강화 시연 실습 - 세화 교육사업 및 장비 등 제작·운송·현장 설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 10px 0;">2025년 6월 16일부터 2028년 8월 15일까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margin: 5px 0;">30%</div> </div> </div>		

□ 위험기계 · 기구 · 설비(13종)

연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사진 (예시)	품목구분	비고
1	프레스전단기 자동화설비	▶ 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언코일러, 언코일레벨러, NC레벨러피더, NC롤피더, 에어피더, 레벨러 등) ※ 코일중량, 폭에 따른 차등지원		위험기계	상시지원
2	금형 교환장치	▶ 프레스·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 Q.D.C(프레스용), Q.M.C(사출성형기용) → 클램프능력, 타입에 따른 차등지원		위험기계	상시지원
3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 취출로봇(자율안전확인신고품) ▶ 호퍼로더 ※ 원료투입 높이1M 이상인 경우, 지원(취출로봇 동시 신청 조건)		위험기계	상시지원
4	천장크레인	▶ 천장크레인(3톤 미만) ※ 「설비구조물불량」 사유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설비를 교체 ※ 투자완료 확인요청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위험기계	상시지원
5	고소작업대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		위험기계	상시지원
6	소음방지시설	▶ 소음발생원 밀폐설비 ▶ 저소음대체 자동화설비 ※ 기존설비 모터용량150%이내 지원		위험기계	상시지원
7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 고위험작업 대체설비(안전인증 자율안전신고 대상인 경우 인증신고품) ※ 타당성검토서 작성, 방호장치 완비		위험기계	상시지원
8	식품가공용기계	▶ 식품가공용기계(자율안전확인신고품, 교체에 한함) (파쇄·절단·혼합기) ※ 기존용량의 150% 이내, 폐기설비 확인		위험기계	상시지원
9	전동지게차	▶ 전동 지게차(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		위험기계	공모지원 (관리품목 별도공고)
10	컨베이어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고정식)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 기존용량의 150% 이내, 폐기설비 확인		위험기계	상시지원
11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위험기계	상시지원
12	산업용리프트	▶ 산업용 리프트(전체교체) ※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고시 안전검사기준 산업용리프트(랙 및 피니언·유압식)에 한함		위험기계	상시지원
13	K-사다리	▶ K-사다리 ※ S마크 인증제품에 한함		위험기계	상시지원

□ 방호 · 안전장치(18종)

연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사진 (예시)	품목구분	비고
1	건설기계 충돌예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충돌예방설비(인체감지형), AVM 일체형 ▶ 굴착기 자동안전 킥커플러(국·내외 안전인증품) 		방호장치	상시지원
2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전복방지장치 등)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안전바, 안전봉) 		방호장치	상시지원
3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전자식(안전인증품) ▶ 일행정 일정지기구 ▶ 양수조작식(안전인증품) ▶ 재기동 방지장치 ▶ 확동식프레스 클러치개조 등 		방호장치	상시지원
4	끼임방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등 ▶ 롤러기 안전장치(급정지·역회전장치, 울·안내로올러 등) ▶ 컨베이어 안전장치(덮개, 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 기타 위험기계 끼임 안전장치 <p>※ 각각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름</p>		방호장치	상시지원
5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p>※ 1세트(35개):안전자물쇠(5), 하스프(5), 밸브잠금(3), 케이블잠금(2), 차단기잠금(5), 전기플러그잠금(5), 안전태크(10) → PSM대상사업장 : 밸브잠금 +5개 가능</p>		방호장치	상시지원
6	크레인 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 비상정지장치(펜던트스위치 교체 등) ▶ 무선원격제어기(전파법인증) ▶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혹 <p>※ 고시 인증기준에 미흡한 경우, 2t미만 크레인 권상용에 한해 지급</p>		방호장치	상시지원
7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타워크레인(3톤미만 무인식) <p>(정격허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이 있는 원격제어기 등)</p> <p>※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품일 것.</p>		방호장치	상시지원
8	지게차 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p>(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광등, 라인빔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운전석안전벨트(연동장치포함) 		방호장치	상시지원
9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 방호울공사 ▶ 권과방지장치 ▶ 낙하방지장치 		방호장치	상시지원
10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울 ▶ 라이트커튼(안전인증품) ▶ 안전매트(안전인증품) ▶ 레이저 스캐너 ▶ 인터록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가동허가장치 등 		방호장치	상시지원
11	추락방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안전인증품) ▶ 안전블록세트(안전인증품) 등 기타 추락방지 시설 		방호장치	상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광창 안전덮개 ▶ 안전블록세트(안전인증품) ※ 안전그네 일체형 : 안전대+안전블럭 <p>※ 전·당해 공사현장용, 품목당 지원한도 1천만원 이내 지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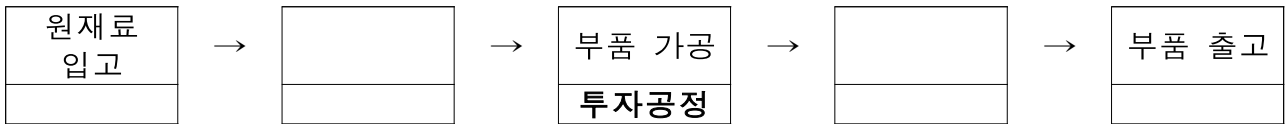
□ 방호 · 안전장치(18종)

연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사진 (예시)	품목구분	비고
12	엘리베이터 설치공정추락 재해예방설비	▶ 엘리베이터 설비작업 전용 비계 및 추락방지망 등		방호장치	상시지원
13	화재폭발 예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가스농도측정기(휴대용) ▶ 방폭전기기계기구 (KCs방폭인증) ▶ 건축물 내화도장공사(전문건설업체 시공限) ▶ 유해가스 모니터링시스템(고정식, 이동식) ▶ 가스검지·경보장치(고정식, 이동식) 	  	방호장치	상시지원
14	질식재해 예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작업불연포 ▶ 100ℓ 이동식포소화설비 ▶ 환기팬 및 덕트 ▶ 임시소방시설(비상경보장치 및 조명, 20kg이상 소화기, 마른모래, 팽창질식 등) 	 	방호장치	상시지원
15	보조금 신속지원 예방품목	▶ 전체 사망사고 예방설비		방호장치	상시지원
16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최소 10개 이상		방호장치	상시지원
17	화물자동차 충돌예방장치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 예방설비		방호장치	상시지원
18	선행안전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환형 난간기둥 ▶ 난간 수평재 <p>※ 안전보건공단 특허 허여 업체의 안전인증(KCS) 제품에 한함</p>		방호장치	상시지원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 사업장 현황

○ 공정분류



○ 생산품 또는 작업내용(2줄 내외로 간략히 작성)

- 원재료(금속)를 자동차부품으로 가공하여 출고

2. 자율신청품목 도입 필요성(현실태 및 유해·위험요인 포함)

- 탁상용 연삭기를 방호덮개가 없는 상태로 사용하여 작업 중 (자율안전확인미신고 제품)

3.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 위험성평가 점검표

○ 투자 공정명 : 자동차부품 가공

재해유형				현실태 및 위험요인	확인결과		개선계획
끼임	떨어짐	부딪힘	기타		적정	보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위험지역 접근에 따른 위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유해위험물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불시기동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위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설물 등 이상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인화성 물질 취급공정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유해가스 취급 발생 공정으로 인한 질식, 건강장해 등의 위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 장해 위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물체에 맞음]	기타 위험[연삭기 슛돌 비래에 의한 맞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호덮개가 설치된 연삭기 사용

※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에 대해서만 작성

※ 끼임, 떨어짐, 부딪침 위험 외 기타 재해유형의 경우, 추가 작성

4. 투자대상 공정 또는 교체설비 및 현장전경

투자대상공정	현장 전경
설비 사진1	설비 사진2
설비 사진3	설비 사진4

제조·서비스업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지원 타당성 검토서

1. 지원품목 :

2. 현재 작업상황 및 작업조건

작업 실태(현황)

○
-
*

작업의 위험성

○
-
*

3. 검토자 의견 및 지원 사유

사업장명		검토자	(서명)	검토일자	. . .
------	--	-----	------	------	-------

II.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추락, 붕괴 등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시저형, 굴절형, 차량탑재형), 안전방망(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방호선반)), 사다리형 작업발판

2.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업주 [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 전문건설업체(하도급업체) 지원은 해당 전문공사 시공 업종별 건설업 등록을 모두 보유한 업체가 직접 설치 시 보조지원 신청자격 부여하며,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한해 지원가능

3. 참여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참여 제한 사유>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융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 원까지

* 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

※ 현장 당 한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되,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총 지원한도(9천만 원)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 가능

※ 당해연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보조한도 내 운영(기 지급 보조금 차감한 후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지원품목)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은 세부내용 참조[첨부1]

품 목	대상설비
시스템비계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시스템동바리	수직·수평·가새재, U헤드 잭, 받침철물 및 부속품 등 일체
고소작업대	시저형, 굴절형, 차량탑재형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방호선반)
사다리형 작업발판	최대높이 3.5m 이하,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사다리

※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조건 미충족시 지원불가

○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 채용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51,467백만원

※ 일선기관별 채용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4. 12. 31.(화) ~ 일선기관별 채용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관할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우편 또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clean.kosha.or.kr) 접수

※ [첨부2]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신청문의) 대표번호 ☎1544-3088 (관할 일선기관 자동 연결)

6.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건설업 산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품목 임차설치 등을 완료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보조 지원품목 임차설치 등 완료 후, 공단의 확인을 요청
-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며,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환수

7. 선금급 제도(신청 시)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선금급 제도 시행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급 지급

8.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 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 지원품목별 보조금액 산정

구분	보조금액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급하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10% 상향 적용
고소작업대	규격 및 임대 기간별 정액 지급하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10% 상향 적용
시스템동바리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방호선반) 사다리형 작업발판	임차·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 ※ 20억원 미만 65%, 20~50억원 미만 50%

①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인 경우

-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은 조건표 금액의 47% 지원
- 고소작업대는 조건표 금액의 100% 지원
- 시스템동바리는 산정된 보조금액의 47% 지원
- 추락방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은 재료비의 50~65% 지원,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100% 지원

②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가능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부가세별도)

○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구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지원비율	65%	50%

○ 안전방망 표준단가

종류	단위	재료비(원)	노무비(원)	단가(원)	비고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	m ²	3,700	7,400	11,100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 에 적합한 것 -(플라잉넷) 사다리: 폭 30cm 내외 × 길이 2m이상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m ²	12,000	8,000	20,000	
추락방호망	m ²	2,400	5,500	7,900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보조 시 재료비 단가 × 설치면적 × 보조비율 적용

○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

종류	단위	규격	단가(원)	비고
사다리형 작업발판	개	1.5~2.5m미만	651,000	현장 당 2개 이내, 안전인증 (S마크) 제품
		2.5~3.5m이하	772,000	

* 1.5m 미만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경우 실거래가 적용(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

■ 시스템동바리 단위체적(m³)당 표준단가(부가세별도) 조건표

○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구분	20억원 미만	20억원~50억원 미만
지원비율	65%	50%

○ 해당 규격별(설치 높이, 설치 간격) 표준단가

[단위: 원]

번호	설치 간격	설치 높이									
		1m 이하	2m 이하	3m 이하	4m 이하	5m 이하	6m 이하	7m 이하	8m 이하	9m 이하	10m 이하
1	0.6m 이하	15,200	15,600	15,900	16,200	16,600	16,900	17,200	17,500	17,900	18,200
2	0.6m 초과~1.2m 이하	12,700	13,000	13,300	13,500	13,800	14,100	14,400	14,700	14,900	15,200
3	1.2m 초과	11,400	11,700	11,900	12,200	12,400	12,700	12,900	13,200	13,400	13,700

번호	설치 간격	설치 높이									
		11m 이하	12m 이하	13m 이하	14m 이하	15m 이하	16m 이하	17m 이하	18m 이하	19m 이하	20m 이하
4	0.6m 이하	18,500	18,900	19,200	19,500	19,900	20,200	20,500	20,800	21,200	21,500
5	0.6m 초과~1.2m 이하	15,500	15,800	16,100	16,300	16,600	16,900	17,200	17,500	17,700	18,000
6	1.2m 초과	13,900	14,200	14,400	14,700	14,900	15,200	15,400	15,700	15,900	16,200

번호	설치 간격	설치 높이									
		21m 이하	22m 이하	23m 이하	24m 이하	25m 이하	26m 이하	27m 이하	28m 이하	29m 이하	30m 이하
7	0.6m 이하	21,800	22,200	22,500	22,800	23,200	23,500	23,800	24,100	24,500	24,800
8	0.6m 초과~1.2m 이하	18,300	18,600	18,900	19,100	19,400	19,700	20,000	20,300	20,500	20,800
9	1.2m 초과	16,400	16,700	16,900	17,200	17,400	17,700	17,900	18,200	18,400	18,700

○ 보조금액 산정방법

- 구간별 시스템동바리 설치 규격이 상이할 경우 조건표상에 각각의 해당 규격(설치 높이, 설치 간격)에 대한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소요비용을 산출한 후 보조비율을 적용

※ 보조금(원) = 설치면적(m²) × 시스템동바리 표준단가(m-원) × 보조지원비율

* 설치면적(m²) : 시스템동바리 설치 구간 바닥면적(m²) = 가로(m) × 세로(m)

■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보조금액(부가세별도) 조건표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건표

[단위: 천원]

구분	50㎡ 미만	100㎡ 미만	150㎡ 미만	300㎡ 미만	450㎡ 미만	600㎡ 미만	750㎡ 미만	900㎡ 미만	1050㎡ 미만	1,200㎡ 미만
비계 1열	356	834	1,313	2,741	4,174	5,601	7,030	8,268	9,435	10,737
비계 2열	417	985	1,551	3,247	4,960	6,694	8,398	10,042	11,687	13,330
수직보호망	111	271	432	914	1,395	1,878	2,358	2,621	3,066	3,513

구분	1,350㎡ 미만	1,500㎡ 미만	1,650㎡ 미만	1,800㎡ 미만	1,950㎡ 미만	2,100㎡ 미만	2,250㎡ 미만	2,400㎡ 미만	2,550㎡ 미만	2,700㎡ 미만
비계 1열	12,027	13,318	14,608	15,698	16,450	17,703	18,784	20,007	20,858	22,076
비계 2열	14,974	16,618	18,262	19,538	20,242	21,810	22,946	24,461	25,754	27,277
수직보호망	3,959	4,001	4,041	4,326	4,488	4,840	5,146	5,497	5,791	6,137

구분	2,850㎡ 미만	3,000㎡ 미만	3,150㎡ 미만	3,300㎡ 미만	3,450㎡ 미만	3,600㎡ 미만	3,750㎡ 미만	3,900㎡ 미만
비계 1열	23,294	24,270	24,962	26,156	27,349	28,263	29,444	30,000
비계 2열	28,526	30,000	-	-	-	-	-	-
수직보호망	6,424	6,699	7,029	7,373	7,626	7,965	8,280	8,482

○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건표

[단위: 천원]

구분	50㎡ 미만	100㎡ 미만	150㎡ 미만	300㎡ 미만	450㎡ 미만	600㎡ 미만	750㎡ 미만	900㎡ 미만	1050㎡ 미만	1,200㎡ 미만
비계 1열	315	738	1,162	2,426	3,694	4,956	6,222	7,316	8,350	9,502
비계 2열	369	871	1,372	2,874	4,389	5,925	7,431	8,887	10,342	11,797
수직보호망	98	240	382	808	1,235	1,662	2,087	2,319	2,713	3,110

구분	1,350㎡ 미만	1,500㎡ 미만	1,650㎡ 미만	1,800㎡ 미만	1,950㎡ 미만	2,100㎡ 미만	2,250㎡ 미만	2,400㎡ 미만	2,550㎡ 미만	2,700㎡ 미만
비계 1열	10,644	11,785	12,927	14,042	14,954	16,094	17,233	18,355	19,494	20,632
비계 2열	13,251	14,707	16,161	17,581	18,742	20,195	21,647	23,076	24,528	25,978
수직보호망	3,504	3,540	3,576	3,893	4,155	4,482	4,809	5,137	5,464	5,790

구분	2,850㎡ 미만	3,000㎡ 미만	3,150㎡ 미만	3,300㎡ 미만	3,450㎡ 미만	3,600㎡ 미만	3,750㎡ 미만	3,900㎡ 미만	4,050㎡ 미만
비계 1열	21,544	22,682	23,774	24,910	26,047	27,183	28,153	29,167	30,000
비계 2열	27,138	28,588	30,000	-	-	-	-	-	-
수직보호망	6,052	6,380	6,694	7,021	7,347	7,674	8,001	8,286	8,611

○ 작업발판 1, 2열 혼합설치인 경우 각각의 면적에 해당하는 정액금을 합산하여 보조금을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 보조금 3천만원 적용

구분	1열	2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3,900㎡ 이상	3,000㎡ 이상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4,050㎡ 이상	3,150㎡ 이상

■ 고소작업대 임차료 보조금액(부가세별도) 조건표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규격 및 임대기간별 보조금

☞ 시저형 고소작업대

[단위: 원]

규격 \ 임대기간	1일	1개월
6m, 7.5m	26,000	195,000
8m	32,000	260,000
10m	39,000	341,000
12m	48,000	390,000
14m	65,000	520,000

☞ 굴절형 고소작업대

[단위: 원]

규격 \ 임대기간	1일	1개월
12m	139,000	1,158,000
16m	185,000	1,495,000
18m	211,000	1,569,000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단위: 원]

규격 \ 임대기간	1일	1개월
1~3.5ton	357,000	7,150,000
5ton	422,000	8,775,000
8ton	585,000	11,050,000

* 임대업체의 고소작업대(시저형, 굴절형) 임대가격에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반비 추가지급 가능(실비로 지급하되 세금계산서 등 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받아 보조지원 비율 65%를 적용하여 정산)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규격 및 임대기간별 보조금

☞ 시저형 고소작업대

[단위: 원]

규격 \ 임대기간	1일	1개월
6m, 7.5m	20,000	150,000
8m	25,000	200,000
10m	30,000	262,000
12m	37,000	300,000
14m	50,000	400,000

☞ 굴절형 고소작업대

[단위: 원]

규격 \ 임대기간	1일	1개월
12m	107,000	891,000
16m	143,000	1,150,000
18m	162,000	1,207,000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단위: 원]

규격 \ 임대기간	1일	1개월
1~3.5ton	275,000	5,500,000
5ton	325,000	6,750,000
8ton	450,000	8,500,000

* 임대업체의 고소작업대(시저형, 굴절형) 임대가격에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반비 추가지급 가능(실비로 지급하되 세금계산서 등 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받아 보조지원 비율 50%를 적용하여 정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용자금 지원 신청서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청인정보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0-00 성별 (남, 여)
	자택주소	(00000)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자택전화	052-***-****	이동전화	010-***-****
신청업체개요	신청업체명	홍길동 신축공사	사업장관리번호	588 - ** - ****
	사업자등록번호	588-***-****	사업개시번호	920 - ** - ****
	대표자	홍길동	법인등록번호	1*****
	근로자수	00 명	회사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052-***-**** (현장소장 000 : 000-000-0000)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1,800,000,000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 해당
	업종	건설업	FAX 번호	052-***-****
	소재지	(000 - 000) 본사주소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000 - 000) 현장주소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30,000 천원	보조신청금액	20,000 천원
	자체 부담금액	10,000 천원	용자신청금액	천원
	선금급 신청금액	천원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10,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 월 00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건설업(예시)

[단위: 대(식), 천원]

투 자 설비명	모델/규격	수량	설치면적 (㎡)	임대기간 (일)	소요금액 (a+b)	자체부담 금액 (a)	보조신청 금액(b)	투자개시 예정일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원)							
계	-	-							
시스템비계	1열	-	100	-	100	50	50	202400.00.	202400.00.
	00산업	1,000							
시스템비계	2열	-	100	-	100	50	50	202400.00.	202400.00.
	00산업	1,000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	100	-	100	50	50	202400.00.	202400.00.
	00산업	1,000							
안전방망	플라잉넷	-	50	-	50	25	25	202400.00.	202400.00.
	00산업	1,000							
사다리형 작업발판	높이 0m	2	-	-	50	25	25	202400.00.	202400.00.
	00산업	1,000							
시스템 동바리	0.6m이하/ 높이5m이하	-	100	-	100	50	50	202400.00.	202400.00.
	00산업	1,000							
시스템 동바리	0.6~1.2m이하 /높이4m이하	-	100	-	100	50	50	202400.00.	202400.00.
	00산업	1,000							
고소작업대 임차료	차량탑재형 (3.5ton)	1	-	00일	100	50	50	202400.00.	202400.00.
	00건설중기	-							
고소작업대 임차료	시저형(8m)	2	-	00일	100	50	50	202400.00.	202400.00.
	00건설중기	-							

주1) 소요금액(a+b) : 자체 부담금액(a) + 보조신청금액(b)

주2) 자체부담금액(a) :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주3) 보조신청금액(b)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임대·설치·해체·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 비율을 반영한 금액

주4) 투자개시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를 임대·구입하여 사업장에 반입·설치·사용하는 시기이며, 투자완료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사용을 완료하여 해체·완료하는 시기를 말함

▣ 첨부서류

구 분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외관도면, 설비 사용기준 확인 서류* 등 - (시스템 비계·동바리 및 안전방망) 평·입·단면도 등 설치면적 산출용 도면 -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검사 필증,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양식1)
④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양식2)
⑤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양식3)
⑥ 건설 사업주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⑦ 임대·설치업체 건설업 등록증 사본 - 고소작업대, 사다리형 작업발판 신청 시 제출 제외	해당시
⑧ 지원품목 설치 현장 전경사진 - 고소작업대, 사다리형 작업발판 신청 시 제출 제외	해당시
⑨ 원·하청 도급계약서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신청 시 해당	해당시

※ ②, ⑦는 임대·설치업체가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

※ 산재보험 완납 여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해당시) 여부 확인 자료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33조 관련)

■ **건설업**

1.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비계 및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제작·판매업체등)
 ➡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요청 안내(공단→사업주) ➡
 보조금 지급요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등)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사업주, 제작·판매업체등→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원받으자 하는 설비에 대한 제작·판매업체등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요청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빙서류 등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요청 :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완료 확인요청 : **설치 및 구입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확인자 서명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시스템비계 작업발판(1열,2열) 및 안전방망 설치면적 변경 시에는 투자계획변경 요청을 생략하고, 공단 투자완료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설치면적으로 정산하되 설치면적 증가시에도 최초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보조금 지급신청 후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시 결정된 사항 및 투자완료확인 사항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확인자 서명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추가 환수금(제제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5년**)
- ② 지원설비 해체완료 전에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③ 보조금 지급결정 후 설치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⑤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후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보조금 지급 후 발생 시 신청 제한기간 3년**)
- ⑥ 공단의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⑦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수칙』을 숙지하였으며,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업주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주 숙지사항

1. 공단의 투자계획 확인 결과에 따른 물품(공사 포함)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중고품을 구입하거나, 투자계획 확인 시 지원설비를 선투자한 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제작·판매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재정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장(주)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물품(공사 포함)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제작·판매 업체간의 거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공단은 특경제작·판매업체 또는 물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선택
5.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6.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장 폐업, 지원설비의 임의매각훼손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3항) 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재정지원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재정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 재정지원사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재정지원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재정지원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재정지원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재정지원사업 추진 주의사항】

- ※ 재정지원사업 진행 시 제작·판매업체등과 구매(공사)계약을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제작·판매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 서류로 인정됩니다.
 - 공단 재정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제작·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 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 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 변경 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 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공단 직책 : 성명 : (서명)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설치구입해체) 확인요청서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건설업(예시)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 .)(남, 여)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	-
확인 요청일	20	* 요청일 : 설치(구입) → 설치(구입)완료 후 5일이내 해체 → 해체(사용)완료 10일 전	
■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 내역			(단위: 천원)
품목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총계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 임차료			
■ 투자완료 확인요청 품목 수량			
1	시스템비계 : 작업발판 1열 ()m ² , 작업발판 2열 ()m ²		
2	안전방망 : 수직보호망 ()m ² , 플라잉넷 ()m ² , 낙하물방호선반 ()m ² , 추락방호망 ()m ²		
3	사다리형 작업발판 : ()개		
4	시스템동바리 : ()m ²		
5	고소작업대 임차료 : 시저형 ()대, 차량탑재형 ()대, 굴절형 ()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00000 임대차(시공) 계약서

임대인(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0000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 1. 공 사 명 :
- 2. 임대차 기간 : 20 ~ 20
- 3. 계약 금액 : 원정
- 4. 공급 가액 : 원정
- 5. 부가가치세 : 원정
- 6. 납품장소 :
- 7. 별첨 : 00000 내역

20

※ 상기 계약서 내용은 필수 기재 사항이며 필수 기재 사항 이외 기타 사항은 임대·설치업체와 사업주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름

임대인 “갑”

주 소 :
 사업자번호 :
 전화 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임차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이 름 :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지급 사업주는 지급요청에 앞서 제작·판매업체등 으로부터 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련 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보조금 지급요청서(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제31조제3항)

■ 건설업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 .)(남, 여)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단위: 천원)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지급 요청금액

■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

1	금액:	천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31조제3항 따라 보조금 지급 설비의 투자완료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사업주)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등) 사본 1부
 3. 입금 증빙서류(전체 투자설비·공사 대금 및 부가세 입금서류) 또는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참여 형태	<input type="checkbox"/> 클린사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input type="checkbox"/>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input type="checkbox"/>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착수일자	20	완료일자	20	
		※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		※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	
참여구분 및 신청설비			지급 결정액	선금 신청액	채권확보방법
<input type="checkbox"/> 클린사업(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input type="checkbox"/>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input type="checkbox"/>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수수료 없음
2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Ⅲ.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첨부1]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첨부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3. 참여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아래 참여 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결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 당해년도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2회 이상 결정받은 사업장

4. 지원내용

-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지정품목	자율신청품목*	관리품목**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상 시	공 모	공 모
연 중	① 1차 : '24. 12. 31. ~ '25. 2. 28. ② 2차 : 4월 중 개시 예정 ③ 3차 : 6월 중 개시 예정	5월 중 개시 예정 (별도 공고)

- * 지정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 **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 자율신청품목 1차 예산 배정액은 전체 예산의 15%내외로 운영하고 2차, 3차 예산은 추후 결정 예정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 각각 최대1,000만원 추가 지원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 ②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③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업종)
- * ①기타각종제조업(22910),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④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 (지원품목) 지정품목 37종 + 자율신청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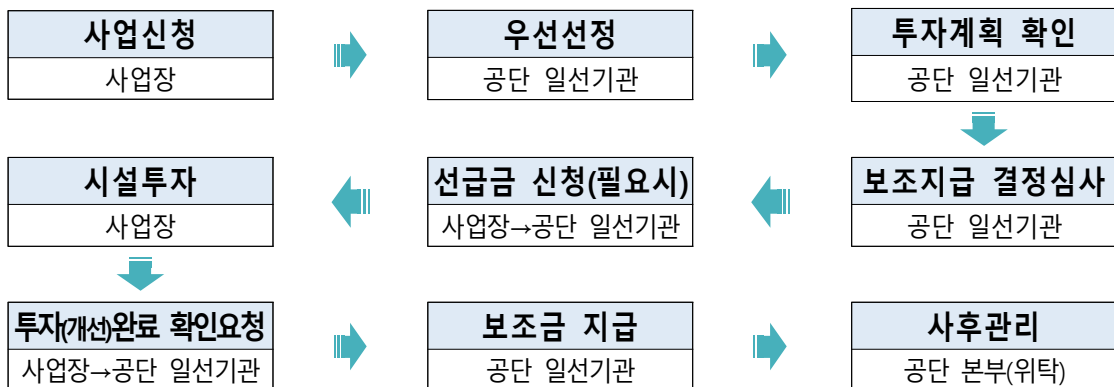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참조[첨부2]

구 분	취급품목
안 전 (30종)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2종)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7종)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3종)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관리품목)
	보 건 (7종)
근력보조슈트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2종)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방진마스크, 귀마개)	
자 율	자율신청품목

※ [첨부2] 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미충족시 지원불가(반드시 해당 품목별 기준 확인)

○ (지원절차)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 필요 시,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첨부3 참조)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350억원
- (신청기간) '24. 12. 31.(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하고,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 ※ 품목별 최소 성능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구 분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 사업장 전경 및 품목별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투자계획)	(첨부4)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4)
⑥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첨부4)
⑦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기계 등 해당 시	해당시
⑧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 지급기준에서 제시한 자료 등	해당시 (첨부4)
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해당시

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시
⑪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자동차 산업 협약은 전산 신청 시 체크한 경우 제출 불필요)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해당시
⑫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근로자수, 위험성평가 인정)	해당시
⑬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 사본	해당시
⑭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자율신청 품목에 한함
⑮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자율신청 품목에 한함
⑯ 신기술 적용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인증서 사본 등)	자율신청 품목에 한함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⑨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를 말하며, 제출 대상 여부는 [첨부 2] 품목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

6.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요청

※ 보조지원 장비에 대하여 공단의 원활한 투자완료 확인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보조지원 장비는 공단에서 요청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 분		비고
①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②-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오프라인 구매 시	온라인 구매 시	
(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②-2 실거래 입증서류: 입금증빙서류		
③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		해당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5)
⑥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해당시(첨부6)
⑦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하여야 함		(첨부4)
⑧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해당시
⑨ 품목별 추가요구 서류(AI 카메라 설치 서약서 등)		해당시(첨부4)
⑩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첨부4)
⑪ 품목별「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		(첨부4)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⑥「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7. 선금급

- 사업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해당 사업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금 지원 운영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급 가능
- *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에 사전 체크한 경우는 생략 가능

8.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9. 취소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환수)하여야 함

<지원 취소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그 밖에 「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처리 규칙」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0. 기타사항

-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품질보증)** 사후관리기간 동안 A/S가 유지토록 지원품목은 품질 보증기간*(3년) 의무가 확보되어야 함
 -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판매업체 부담 조건)
- **(명판부착)** 기본적인 제반정보*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부착
 - * 필수정보: 제품명(모델명포함), 일련번호, 제조년월, 제작업체명, 판매업체명(연락처)
 - ※ 스티커, 종이 및 그 밖에 쉽게 파손·변형·지워지는 재질(방법)로의 부착은 불가하며,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
 - ☞ 일부 소형이거나 소액 제품(스마트 귀마개 등)의 경우, 효용성 및 편의성,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
-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관련 위험 기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지원제외)** 안전동행 지원사업(舊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에 설치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

Q.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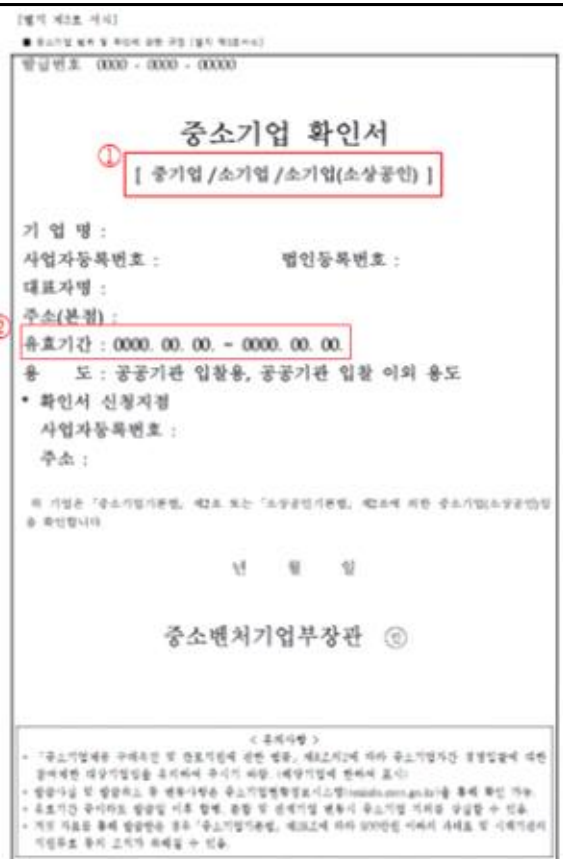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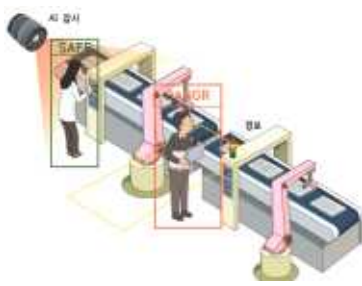


■ 확인사항중

-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KC전파인증*이 최소성능기준에 있더라도 전파법에 따른 면제 대상이면 제외
- *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 (지원목적) 위험구역 내 접근 시 실시간 감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끼임·충돌 및 그 밖에 위험상황(화재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공지능(AI)모델 기반으로 카메라 또는 센서(Lidar 등)를 통해 위험영역·행동, 사고발생 등을 인지하여 경고 또는 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정식)	1. (신청 시) 생산설비, 위험기계기구 사용 공간, 작업자가 상시 이동, 작업하는 구역에 설치 2. 일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제출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 기준가격 산정
AI 화재감지기 (옵션)	1. (신청 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장 중 극초기에 화재·폭발예방 기능을 희망하는 사업장 - 다만,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기능 옵션에 화재 또는 폭발인지 기능이 없을 것(중복 기능 지양) ※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설치 없이 단독설치 불가 (단독설치는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으로 지원) 2. 디바이스와 무선통신이 연결된 스마트폰 등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될 것.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구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또는 센서 (그 외 감지기능장치 등)	1.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2. KC전파인증서 제출

<p>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p>	<p>■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선택 시)*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경보 및 상황 전파 조치 * 쓰러짐, 화재 감지 등 2. 분진,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제작, 사무실 설치 3.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Q)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 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4. KC전파인증서 제출
<p>감지영역설정</p>	<p>- 카메라 또는 센서(라이더, 그 외 감지기능장치 등)가 감지하는 위험구역 변경 가능</p>
<p>경보장치</p>	<p>-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 KC전파인증서 제출</p>

- (옵션) AI 극초기 화재·폭발 예방장치

구 성	최 소 성 능 기 준
<p>디바이스 (감지기, 콘트롤 박스 또는 그밖에 부속품)</p>	<p>■ 해당 구성이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소 2개 이상의 다음과 같은 모드 및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15초 이내로 불꽃을 감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불꽃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경보 또는 조치가 되지 않고, 불꽃이 단독으로 발생·존재하는 경우에 경보 또는 조치 - 사람의 존재 상관없이 불꽃이 발생·존재하면 경보 또는 조치 2. 무선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디바이스 경보음 단독 전원차단 불가) 3. 작동의 이상 및 부품 교체 등을 상시 진단하는 자가 기능이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바로 인지 가능 (연결된 스마트 폰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가능) 4. 전파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5. 소방 KFI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감지기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또는 옥내외형 인증을 받아야하며, 반드시 방수형일 것 6.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감지기만 해당) 7.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Q)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1-2.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 (지원목적) 위험구역 내 접근 시 실시간 감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끼임·충돌 및 그 밖에 위험상황(화재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공지능(AI)기반 모델 및 이동통신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통해 근로자가 상시 이동하는 작업(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행동·상황 등을 인지하여 모니터링 및 경보를 해주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이동식)	1. 건설업 본사에 지원 - 건설업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도급·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 2. 일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제출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
구 성	최소 성능기준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모니터, 그 밖에 장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유무·추락과 옵션(선택시)*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경보 및 상황 전파 조치 * 쓰러짐, 화재 감지 등 2. 분진,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제작, 사무실 설치 3.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4.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5. KC전파인증서 제출
카메라	1.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2. IP55이상 3. 카메라는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와 상호 연결될 것. 4. 전파인증(KC)을 받은 제품 5. 배터리는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하고, 별도의 충전 기구를 통해 외부충전 가능
경보장치	○ 작업장 소음에서도 위험 경고 등을 시각·청각적으로 바로 인지 ○ KC전파인증서 제출
기타	○ 스마트폰 등을 통해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 상황시 알림 기능이 있을 것

2-1.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ILO형)



- (지원목적) 작업 중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ILO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고위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자체 구매비용 미지원)신규 설치인 경우, 해당 고위험 기계설비 구매 계약서 사본 제출 - I-L-O 구성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하되, 안전입력기기(I)만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2.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기 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비상정지장치, 도어잠금장치, 안전제어기기, safety릴레이, 그 밖에 옵션·부속장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래와 같이 입력처리 출력기능(I-L-O)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입력기기(I) : 비상정지 및 도어잠금장치(락, 스위치 등) 설치 - 안전제어기기(L) : 안전컨트롤러 또는 안전PLC 등 설치 - 안전출력기기(O) : safety릴레이 등 설치 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의 구성품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구조일 것 4. 설치된 설비에 접근하면 설비가 설정 단계에 따라 감지 및 정지 5.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에 관한 기능 추가(옵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트 커튼, 레이저스캐너, 방호울, 안전매트 등 ※ KC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경보장치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2-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인공지능형)



- (지원목적) 작업 중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 및 인공지능(AI)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인공지능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고위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설치인 경우, 해당 고위험 기계설비 구매 계약서 사본 제출(기계설비 자체 구매비용 미지원) ※ 비상정지 및 도어잠금장치(락, 스위치 등) 등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구조일 것 3.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既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3. KC전파인증서 제출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선택시)*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경보 및 조치 * 쓰러짐, 화재 감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어 또는 방호덮개 등이 닫혀 있어 기계가 정상 가동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끼임·부딪힘 등의 위험구역에 들어오는 경우, 고위험 기계설비가 즉시 정지 2.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또는 사무실 설치 3.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4.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구성품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5.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에 관한 기능 추가(옵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트 커튼, 레이저스캐너, 방호울, 안전매트 등 ※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6. KC전파인증서 제출
감지영역설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메라가 감지하는 위험구역 변경 가능
경보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2. KC전파인증서 제출

3.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 (지원목적) 기계설비 등에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동형 위험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등 충돌위험시 서행·정지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1. (신청 시) 무인운반차 등 이동형 위험설비를 보유(또는 신규 구매) 및 사용하는 사업장 2.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既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 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비상정지장치, 레이저스캐너, 안전제어기기, safety릴레이, 그 밖에 장치 등	1. 아래와 같이 입력처리 출력기능(I-L-O)을 갖출 것 - 안전입력기기(I) : 레이저 스캐너 및 비상정지장치 등 설치 - 안전제어기기(L) : 안전컨트롤러 또는 안전PLC 등 설치 - 안전출력기기(O) : safety릴레이 등 설치 2.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의 구성품 등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3. 근로자가 위험 영역에 접근 시 단계에 따라 정지해야함
경고장치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 입력처리 출력기능(I-L-O) 지원판단기준 : I-L-O 구성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 하되, 안전입력기기(I)만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4.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



- (지원목적) 고소작업대에 “비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 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거리(높이)를 센서로 측정하여 위험 높이인 경우, 자동정지하는 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1. (신청 시)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를 보유(신규구매포함)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	1. KC인증(전파인증) 제품일 것 2. 감지방식: 비접촉식(전파, 레이저 이상의 성능) 3.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를 고소작업대 개당 최소 4개 이상을 탈착이 불가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할 것 4.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5. 상부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상부 사이 간격 최소 0.6m에서 정지할 것.

5.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 흔들림 방지장치)



- (지원목적) 크레인에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및 흔들림 방지장치” 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크레인에 인공지능(AI)기반 모델과 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근접하는 경우, 차례로 경고 및 정지하는 시스템
 - 옵션 : 크레인이 물건을 인양·이동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거하여 물건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공지능(AI)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1. (신청 시)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2.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인증을 다시 받은 경우, 제품심사 비용 및 부대비용(설계도면 작성, 하중시험 등) 일부 지원 가능 ※ 단, 안전인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3. 일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제출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흔들림 방지장치 (옵션)	1.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2. 출발·정지, 이동·정지 직후 흔들림이 거의 없어야 할 것. 3.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5.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1. 종류 : 일반카메라(열화상 카메라 설치 가능)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3. KC전파인증서 제출
통합제어장치 (AI영상분석서버, 무선통신기, 컴퓨터 및 그 밖에 부속장치 등)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이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 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AI알고리즘 사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2. KC인증(전파인증) 3. 시스템 탑재하여 모니터링 화면이 끊기지 않고, 성능을 안정적으로 적정하게 유지 4.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5. 설치·운전환경에 따라 구역 및 단계별 작업자를 감지하고, 경고·정지 기능을 탑재할 것. - 설치 후, 화물 권상·권하 시 매달린 화물 밑에 작업자가 있는 경우, 권상·권하동작 정지
고보라이트 (바닥조명)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KC전파인증서 제출
경보장치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경보음) 필수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KC전파인증서 제출
흔들림 방지장치 (옵션)	○ 출발·정지시 발생하는 관성 및 이동·정지 위치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진동(흔들림)을 제거 ○ 옥외 설치시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 (지원목적)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깔림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안전장치로서 다음을 말함
 - 전도예방장치 : 하역운반기계가 중량물 운반시 무게와 중심을 감지하여 전도 등을 예방하는 장치
 - 충돌방지장치 : 카메라·센서를 통해 하역운반차량이 주변 근로자와 충돌 위험을 경고장치로 알려 예방하는 장치
 -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 무선장치 및 작업자가 착용한 태그(tag) 등을 통해 전동지게차 및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하는 장치
 -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 중장비에 자석 등으로 모니터, 카메라, 경보기 등을 누구나 쉽게 부착하여 사람을 인식하고 접근 시 경고발생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1. (신청 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부착형 충돌방지장치는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도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가 상시로 사업장(현장)을 출입하고 작업 전후 탈부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이 경우 사업장당 최대 5대) ※ 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설치는 전동지게차만 가능 ※ 충돌방지장치(일반센서형)은 전도예방장치의 옵션으로 지원가능 2. (신청 시) 안전장치를 부착하려는 지게차는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지자체 신고를 필한 설비에 한함.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충돌방지장치(카메라센서형)는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른 기준가격 결정(5건 이상, 최저가격) 가능

○ (성능기준) 구분별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 ① 전도방지장치(옵션: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구성	최소 성능기준
로드센서	1. 로드센서는 정격하중에 85% 이상 및 기울기가 위험 수준 시 경보가 작동할 것 2. 방수방진등급: IP55이상 3. KC전파인증서 제출
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모니터에는 지게차 정격하중, 화물운반무게, 안정도(기울기) 등을 표시 ※ (옵션)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선택 시, 충돌방지 현황(위험 정보 등) 표시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로드센서, 모니터, 무선통신기, 충돌감지장치(옵션) 등) 간 연결될 것. (유선 연결은 지원 불가) 3.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작업 시, 정상작동을 유지할 것) 4. KC전파인증서 제출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 후방충돌 감지장치는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감지장치는 최소 1m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3. KC전파인증서 제출

※ 필수 구성품(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등 충돌방지장치(일반센서형)과 통합하여 설치 가능

- ② 충돌방지장치(카메라 센서형)

구분	구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센서형	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 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빗물, 분진 등의 유입이 되지 않는 운전석 내부에 설치되는 필수구성품은 미적용) 4. 단, 지게차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3자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경보음 및 알림(충돌방향·위치 표시)을 알 수 있을 것 -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은 최소 10m 이상일 것. 5. KC전파인증서 제출
	카메라 및 감지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3.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4. KC전파인증서 제출

※ 필수 구성품(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등 타 장비(전도예방장치 등)와 통합하여 설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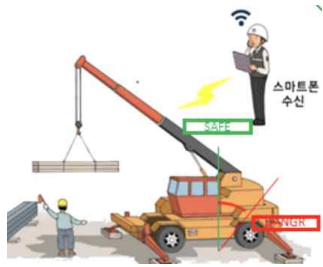
- ③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구성	최소 성능기준
필수구성품 (무선통신기, 제어장치, 경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무선통신기(지게차등)는 작업자태그와 통신기 간 서로 접근시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서로 통신기(지게차 등)끼리 근접하여 멈췄을 경우, 충돌범위 외로 벗어날 수 있는 임시 해제기능이 있어야 함 2.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작업 시, 정상작동을 유지할 것)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외부 노출장비만 적용) 4. KC전파인증서 제출
작업자 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외부 노출장비만 적용) 2. 작업자태그는 최소 24시간 이상 작동되고, 작업자가 임의로 off할 수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가 불편이 없는 정도의 소형·경량일 것 3. KC전파인증서 제출

- ④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구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3.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4. KC전파인증서 제출
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3. 경보장치는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4. KC전파인증서 제출
부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석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설비에 탈부착이 가능할 것 2. 부착 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7.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목적) 이동식 크레인에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 시스템” 을 설치하여 전도·떨어짐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동식 크레인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동식 크레인 통합전도방지 시스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2.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안전검사 고시] 별표2[크레인 검사기준]를 따름.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 기준가격 산정 <p>※ 단, 제조사에서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p>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이동식 크레인 안전장치 일체형 (컨트롤러, 모니터, 붐길이센서, 붐각도센서,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스위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선통신으로 별도 모니터링(스마트폰 등)이 가능하고, 위험상황을 시각 및 청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 2. 모니터에는 하중, 작업반경, 붐높이, 위험상황 등이 표시될 것 3. 붐길이센서 :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 4. 컨트롤러: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 5. 로드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 6.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인증품(KCs) 사용 7. KC전파인증서 제출

8.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목적)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을 설치하여 깔림·끼임·전도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p>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통합전도방지 시스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안전검사 고시] 별표12 [고소작업대 검사기준]를 따를 것.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 받아 기준가격 산정 <p>※ 단, 제조사에서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p>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p>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일체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선통신으로 별도 모니터링(스마트폰 등)이 가능하고, 위험상황을 시각 및 청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 2. 모니터에는 하중, 작업반경, 붐높이, 위험상황 등이 표시될 것 3. 붐길이센서 :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 4. 컨트롤러: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 5. 로드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 6.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인증품(KCs) 사용 7. KC전파인증서 제출

* 컨트롤러, 모니터, 붐길이센서, 붐각도센서, 아웃트리거상태감지컨트롤러, 아웃트리거인출감지센서, 잭착지감지센서, 선회센서, 하중컨버터, 과부하방지장치

9.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목적)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를 설치하여 전도·떨어짐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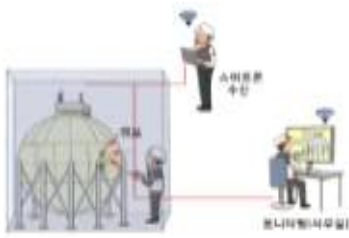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2.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43호[안전검사 고시] 별표3[리프트 검사기준]을 따름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p>※ 단, 제조사에서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p>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장치 일체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선통신으로 별도 모니터링(스마트폰 등)이 가능하고, 위험상황을 시각 및 청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 2. 모니터에는 하중, 작업반경, 붐높이, 위험상황 등이 표시될 것 3. 붐길이센서 :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 4. 컨트롤러: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 5. 로드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 6.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인증품(KCs) 사용 7. KC전파인증서 제출

* 붐-아웃트리거연동장치, 아웃트리거 잭하중감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붐과인출 방지장치

10-1.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고정식)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감지기, 수신반 등을 설치하여,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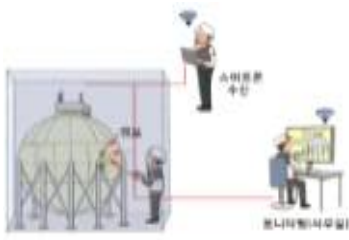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고정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화재·폭발 위험장소 또는 위험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기준에관한규칙 제243조(소화설비) 설치조건에 해당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8조 [별표18]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경우, 질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옵션)할 수 있음 2.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KCs) 사용 및 관련 서류(인증서 등) 제출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분	최소 성능기준
수신반 (모니터링 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면에서 가스감지기 위치 및 감지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 2. 스마트폰 등을 통한 동시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스마트폰 등으로 경보 3. 확장 유닛(다채널)을 사용하여 추가되는 기능 및 수치 등이 화면에 표시될 것 4. 긴급차단장치 및 HMI시스템 등 가스 확산 방지, 시스템 통제 기능을 위한 구성품 추가(옵션) 가능 5. 방수방진등급: IP65 이상 6. 향후 시스템 설치 완료 후, 시공 업체에서 반드시 성능시험을 실시할 것(결과서 확인) 7. KC전파인증서 제출
가스감지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가스의 감지와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감지기는 항시 가동) 2. KC전파인증서 제출
경보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경보음) 필수 2.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 수신반내 탑재가능 3. KC전파인증서 제출

※ 각 구성품(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안전인증품(KCs)) 및 방폭구조)

10-2.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동식)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이동이 가능한 감지기, 수신반 등을 통해,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이동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수행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전문건설업(①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②기계설비·가스공사업, ③가스·난방공사업, ④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 - 인화성가스·액체* 등 취급·저장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단, 사업장 내에서 정비·보수 목적으로 사용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5항 인화성가스, 제6항 인화성액체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인화성 액체 등 물질은 지원 불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8조 [별표18]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경우, 질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옵션)할 수 있음 2.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 안전인증품(KCs)은 인증서 등 관련서류 제출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p style="color: blue;">※ 단, 실거래 세금계산서(5건 이상)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p>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분	최소 성능기준
수신반 (모니터링 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면에서 가스감지기 위치 및 감지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 2. 스마트폰 등을 통한 동시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스마트폰 등으로 경보 3. 확장 유닛(다채널)을 사용하여 추가되는 기능 및 수치 등이 화면에 표시될 것 4. 방수방진등급: IP65 이상 5.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KCs)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의 경우 설치·사용 조건에 관계없이 구성품 일체 방폭인증(KCs)을 받은 제품만 지원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 - 인화성가스·액체 등 취급·저장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신청 사업장 내 화재폭발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장소(공정)가 없으며, 해당 장소에서만 사용함을 사업주가 확인한 경우에만 비방폭형 지원 가능 ※ 성능확인서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준수사항 기재 <p style="color: blue;">6. KC전파인증서 제출</p>
경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경보음) 필수 ○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 수신반내 탑재가능 ○ KC전파인증서 제출

※ 각 구성품(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안전인증품(KCs)) 및 방폭구조

10-3.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AI화재감지기)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AI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을 설치하여 극초기에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공지능(AI), 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불꽃 등을 초기에 인지·반응하여 화재·폭발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AI화재감지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화재·폭발 위험장소 또는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은 본사를 통해 지원가능) 2. 디바이스와 무선통신이 연결된 스마트폰 등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함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디바이스 (감지기, 콘트롤박스 또는 그밖에 부속품)	<p>■ 해당 구성이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소 2개 이상의 다음과 같은 모드 및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15초 이내로 불꽃을 감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불꽃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경보 또는 조치가 되지 않고, 불꽃이 단독으로 발생·존재하는 경우에 경보 또는 조치 - 사람의 존재 상관없이 불꽃이 발생·존재하면 경보 또는 조치 2. 무선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디바이스 경보음 단독 전원차단 불가) 3. 작동의 이상 및 부품 교체 등을 상시 진단하는 자가 기능이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바로 인지 가능 (연결된 스마트 폰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가능) 4. 전파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5. 소방 KFI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지기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또는 옥내외형 인증을 받아야하며, 반드시 방수형일 것 6.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감지기만 해당) 7.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10-4.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AI계측장치)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AI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AI카메라를 통해 아날로그(바늘, 막대, 숫자형 등) 계측기의 측정값을 변환하여 서버 및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AI 계측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계측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등 화학설비(배관 등 포함)* 및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참조 ※ 단, 계측장치 중 PT(Pressure Transmitter), TT(Temperature Transmitter), LT(Level Transmitter) 등 압력, 온도, 수위 등의 측정값 전달이 가능한 장치(Transmitter 등)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제외 2. 카메라를 통한 계측장치의 측정값은 무선방식을 통해 원거리에 위치한 근로자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과거 측정기록 포함)하며 실시간 확인이 가능할 것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모니터, 그 밖에 장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설치된 계측장치 종류에 따라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항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 ○ KCs(방폭인증)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폭구역과 관계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설치도면 등 설명 관련 서류 제출) ○ 컴퓨터 등으로 무선연결을 통해 송수신의 장애가 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이지가 정상범위를 벗어날 경우(고장, 파손 등 포함), 화면을 통한 경고 알림기능 - 계측장치의 게이지 정상 작동범위를 설정가능 -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알림(SMS 등) 기능 가능. ○ KC전파인증서 제출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S(방폭인증)제품(관련 서류 동봉 및 사본 제출) ○ IP 55 이상 ○ KC전파인증서 제출

10-5.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화학물질 누출방지형)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AI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검출대상물질(유해화학물질 등)과 일반 액체(빗물 등)을 선택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된 누액감지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화학물질 누출방지형)	1. (신청 시)급성독성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유해화학물질 등 제조·취급·저장 사업장 중 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설비 보유 사업장 2.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제어기 및 모듈	1. 누출 감지 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 2. 물질 누출 감지 시 무선통신 연결방식을 통해 연결된 컴퓨터 또는 이동장치문자(SMS) 및 누출 경고 알림이 가능 3. KC(전자파 인증) 4. 전원 공급 차단 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등을 통해 최소 30분 이상 유지할 것 5. 물질이 센서(필름)에 감지될 경우, 대상 물질만 구별하여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물질 접촉 시에도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 6. 누출 여부와 관계없이 센서 주변 상태를 감지 및 모니터링
커넥터 및 센서	1. 외부환경 또는 사업장 환경에 따라 적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 보유 2.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 센서의 경우, 누출액이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방수등급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3. KC전파인증서 제출

10-6.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방폭 정전기 측정기: 옵션)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AI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방폭안전인증을 받은 정전기 측정기를 통하여 안전하게 점검하고, 이를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등과 연결하여 작업관리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방폭형 정전기 측정기 (옵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품목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중 방폭 정전기 측정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 2. 무선통신 등으로 스마트 폰과 연결되어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수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정전기 측정기 (본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따른 안전인증품 (KCs, 내압방폭인증)일 것 2. 전파인증(KC) 제품 3. 정전기 측정범위 : -40kV~40kV 4. 무선통신 등으로 스마트 폰과 연결되어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수치를 모니터링을 가능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이 가능한 거리는 최소 10m이상이어야 하며, 스마트 폰과 연결이 원활하고 수치 등 - 측정기 본체에 정전기 수치가 디스플레이 될 것. 5. 검교정을 받았다는 검교정서가 있어야 함.

※ 각 구성품(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안전인증품(KCs)) 및 방폭구조)

10-7.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스마트 피난유도설비)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정보통신, 센서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있는 위치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정보통신, 센서기술 등을 활용하여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있는 위치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피난 유도설비)	1. (신청 시) 화재·폭발 위험장소 또는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2. 투자완료확인(요청)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스마트 피난 유도설비	1. 스마트 피난유도설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 - 화재 발생 시 연기, 열 등을 감지하여 레이저로 비상구 위치를 안내할 것 ※ 감지기는 소방 KFI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비상구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움직임 조절이 가능할 것 - 외부 신호(화재수신기, 경종 등) 연동하여 작동될 것 - 화재 발생 장소를 회피하여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일 것 2. 연기가 자욱한 화재 상황에서 레이저 가시성 등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3.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또는 전용 PC(모니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4. KC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11.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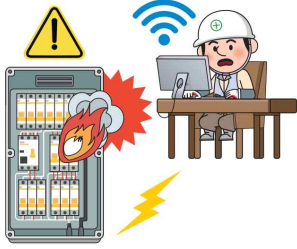
- (지원목적)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이륜차 충돌보호용 에어백 조끼” 를 지원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전도·충돌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륜차 운전자가 충돌 등으로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 조끼와 이륜차에 연결된 고리가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1. (신청 시) 배달, 택배업, 음식업 등 관련 업종에 지원(표준산업분류: 49401~2, 561XX) ※ 최대 지원한도(수량)은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에 한해 지원 2.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른 기준가격 결정(5건 이상, 최저가격) 가능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1.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 받은 제품(CE 등) 2. 이륜차 운전자가 전도·충돌 등으로 운전석에서 이탈할 경우, 이륜차에 연결된 버클(고리)등이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12-1.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전기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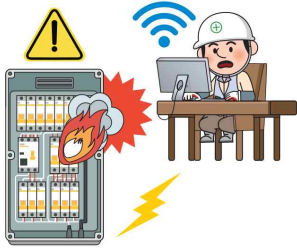
- (지원목적) 산업현장의 전기사용 시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누전 등 다양한 재해를 예방
 - (품목설명)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전력사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 이상* 발생 시 알림 및 조치하여 전기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
- * 전력 이상: 과부하, 누전, 이상주파수, 과전압, 전원꺼짐, 온도상승(화재) 등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1. (신청 시) 전 업종 지원 가능(설치도면 제출) 2.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실거래 세금계산서(5건 이상)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1. 과부하, 누전, 과전압, 이상 주파수, 전원차단 등 이상전력 감지해야 하며, 발생 시 알림* *문자발송, 스마트폰 어플알림, 내부 경보(알림) 등 - 작업장 소음에도 위험 경고 등을 경보음 을 통해 즉시 인지 할 것(경보음 off 불가) 2. 원격으로 전력강제 제어가능 , 대기전력 차단, 부하 조절(초과시 전원차단) 3. 분전함 내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케이스를 설치할 것 4. 무선, 유선 중 1가지 이상으로 스마트폰 또는 전용PC(모니터)에 연결될 것 5. KC(전파인증)제품을 받은 제품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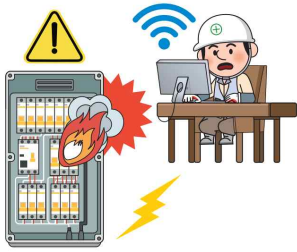
12-2.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아크제거장치)



- (지원목적) 산업현장의 전기작업 시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로 아크 폭발 사고 등 사망사고를 예방
- (품목설명) 센서 등을 통해 수배전반에 발생하는 전기아크를 감지하여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스마트 안전장치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아크제거장치)	1. (신청 시) 수배전반을 보유(소유)한 사업장 - 1식 기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 CPU관련장치, 유·무선장치, 기타 자재 등 지원 가능 2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 기준가격 산정
구성	최소성능기준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아크제거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배전반에서 아크발생시 4ms내(투입동작시간)작동하여 아크를 제거하고, 해당 기능이 10회 이상 가능할 것 - KOLAS인증기관에서 KOEMA0931규격(아크제거기)에 따른 시험성적서(적정)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투입동작시간(4ms), 무부하개폐시험 등에서 아크제거 횟수가 10회* 이상일 것.(시험성적서 제출) * 동작횟수(관련기기)에 대해 3년간 무상A/S 가능할 것(그외 기기는 공고 기준을 따름) - 제3자 모니터링 기능 : 디스플레이는 일반컴퓨터 모니터 크기이며, 실시간 아크 발생의 현황과 아크발생 등 위험상황 발생시 시각 및 소리로 알릴 수 있어야 함. ※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 CPU관련장치, 유·무선장치, 기타 자재 등 지원 가능

12-3.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동식 누설전류통제장치)



- **(지원목적)** 건설현장에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누설 전류로 인한 감전, 화재 등 사망사고를 예방
- **(품목설명)** 신기술을 활용하여 누설전류를 감지 및 통제하고 동시에 경보 알람을 통해 누설전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이동식 누설전류통제장치)	1. 건설업 본사에 지원 - 건설업 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도급·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 2. 투자완료확인(요청)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
구성	최소성능기준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이동식 누설전류통제장치)	1. 이동 가능한 형태로 제작된 것 2. 누설전류 발생 시 누설전류 값을 5mA 이하로 제한하고, 자체 경보 및 알림 - 자체 경보는 작업장 소음에도 즉시 인지될 것 - 알림은 문자 발송 또는 스마트폰 앱 알림 등 3.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또는 전용 PC(모니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4. KC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절연변압기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정격용량 5kVA 이하

13. 근력보조슈트



- (지원목적)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장기간 반복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자에 대해 근력운동을 보조할 수 있는 “**근력보조슈트**”를 지원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 (품목설명) 고정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되는 작업을 인공골격·근육, 센서 및 동력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줄여 주는 슈트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근력보조슈트	1. (신청 시) 근골격계 부담작업(2호 ~11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 ※ 단, 지원사업장 내 사용으로 한함(산안법 상 특수고용형태 택배원은 지원가능) - 신청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제출받을 것(첨부4) ※ 참조 : 공단 홈페이지-사업소개(산업보건)-근골격계질환예방 ※ 최대 지원한도(수량)는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에 한해 지원 2. 가격결정근거자료 제출 ※ 수입면장(수입품) 또는 실거래 세금계산서(국내, 5건 이상, 최저가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근력보조슈트	1. CE 중 CoC*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 * Certificate of Conformity : 적합성 인증 ※ 제품자체(전체) 안전성 및 품질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2. 외골격, 철제프레임, 동력 및 센서, 인공(합성)근육 등으로 구성된 제품 (밴드, 섬유, 패드만으로 이루어진 슈트는 지원불가)

14.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 (지원목적)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적은 근력과 일정한 근력으로 보조할 수 있는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를 지원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 (품목설명) 사람이 취급하기에 무겁고 다양한 중량물을 일정한 힘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시) 근골격계 부담작업(6호~10호)에 해당되는 단위 작업장소에 한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제출받을 것(첨부4) ※ 참조 : 공단 홈페이지-사업소개(산업보건)-근골격계질환예방 2.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실거래 세금계산서(5건 이상)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량물 취급시, 센서 및 공압기술로 무게를 자동감지 및 제어하여, 작업자가 일정한 근력(부하)을 사용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사용자의 근력(부하) 유지·감소 기능 확인용도)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2. 다관절 구조로 x,y,z 축, 전 방향(유선형 움직임포함)으로 자유롭게 움직임 가능 3. 기계 동력만으로 중량물을 취급(예 : 리프트, 호이스트 등)하는 것이 아니어야함 4. 취급중량은 최대100kg 이하이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 앵커볼트로 고정 등 5. 취급중량물 무게(중량)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무게(중량)가 취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알람 등이 울려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하며 정지하여야 함(알람은 off또는 소리를 줄일 수 없어야 함)

15-1.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스마트 귀마개)



- (지원목적) 소음 발생 작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스마트 귀마개” 를 지원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함.
- (품목설명) 전파 및 그 밖에 스마트 기술 등을 통해 소음을 제거하는 귀마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스마트 귀마개)	1. (신청 시) 소음작업(85dB이상)에서 단위 작업장소 기준으로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른 소음 노출 근로자의 200%(2배)에 한해 지원 2. 귀마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KCs)일 것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스마트 귀마개	1. 안전인증품(KCs)일 것 2.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유해소음 차단이 가능할 것 3. 1회 충전시 16시간 이상 사용가능 4. KC전파인증서 제출

15-2.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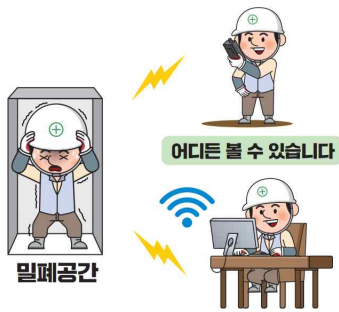
- (지원목적) 분진 발생 작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방진마스크를 지원하여 원활한 호흡 및 효율적인 필터 사용과 직업병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함.
- (품목설명) 호흡과 연동된 센서를 통하여 공급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전동식 방진마스크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방진마스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른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대상 근로자의 200%(2배)에 한해 지원 2. 전동식 방진마스크는 안전인증품(KCs) 일 것 3. 여과재(방진필터)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라 특급/1급/2급을 사용할 것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방진마스크 (본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인증품(KCs)일 것 2.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라 적절한 방진마스크 등급 및 여과재(방진필터)를 선정할 것
전동팬 (내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스크 내부 압력 감지 및 적절한 공기의 양을 자동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 2. 전원(배터리) 상태(잔량 확인 및 배터리 용량 부족 시 경고 기능)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배터리는 1회 완충 시, 최대 8시간 이상 사용 가능

16.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 **(지원목적)** 무선통신기술 및 그 밖의 신기술을 적용한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하여 관리자 및 그 외 근로자들에게 알려,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 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여
- **(품목설명)** 무선통신(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밀폐 작업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질식·중독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1. (신청 시)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보유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건설업은 본사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618조, 별표 18에 포함되는 장소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5항 인화성가스, 제6항 인화성액체 취급·저장 설비 보유 사업장에 지원불가 ※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지원 2.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른 기준가격 결정(5건 이상, 최저가격) 가능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디바이스 (측정기, 옵션 등)	1. 산소, CO, H2S 등의 농도 및 질식·중독 위험범위를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할 것(추가 센서 옵션 가능) 2. 센서 및 배터리 등 교체 또는 이상 등을 전원 작동시 진단하는 자가 기능이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3.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디바이스는 경보음 off 불가) 4. 작업장 소음에서도 위험 경고 등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5. 스마트 폰 등과 무선방식으로 연결되고, 방해물로 인한 차폐상황에서도 최소 20m 이상 연결이 끊기지 않고 작동할 것 6. 배터리는 충전식인 경우에는 1회 충전시 16시간 이상 작동할 것 7. KC(전파인증)제품, 디바이스의 설치된 가스센서는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관련 서류 동봉 및 사본 제출) 8. 방수방진등급 : IP55이상 9. 현황 모니터링, 중계기(증폭기)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품(옵션) 등은 지원가능

17-1.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환기설비 통합 시스템)



○ **(지원목적)**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을 통합관리하여 유해물질 노출 및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품목설명)**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의 사용량, 정보, 노출량 등 사용정보와 환기장치의 모니터링·통제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유해물질 통합안전 관리시스템 (환기설비 통합 시스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작업환경측정을 시행 중인 사업장 중 화학공정 또는 실험·연구실을 보유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상 측정대상 공정에 화학공정 또는 연구·실험실 확인 2. (신청 시) 컨트롤 디바이스와 최소1개 이상의 설치 디바이스로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션(측정센서 디바이스)는 설치 디바이스와 같이 신청가능(단독 지원불가) 3. 국소배기장치의 적정 제어풍속 및 구조 등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완료 시, 제어풍속 측정하여 확인(최저 풍량에서 측정) 4. 컨트롤 디바이스를 통해 각 별도 디바이스와 연계(기능·환경의 상태 확인 및 제어 등)가 가능해야 함. 5. 전파관련 제품은 KC전파인증을 받아야하며, 유해물질 센서 관련 제품인 경우, 각 센서는 1년이내의 시험성적서 및 검교정을 받은 제품일 것. 6.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컨트롤 디바이스(필수)

구 성	최소 성능기준
컨트롤 디바이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스플레이(10인치 이상)와 인터페이스는 사업장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보는데 선명하고 불편이 없어야하며, 디바이스는 사업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보호정도(IP, 방폭 등)와 재질을 갖추어야함 2. 컨트롤 디바이스는 각 기기별로 전원상태, 연결상태, 위험 시 경고음, 고장 등 이상상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현황 또는 정보 등을 볼 수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장 적용 시 : 시약현황(반출입 포함), 문열림상태, 필터 교체필요 알림(필터식인 경우) - 전체 또는 국소배기(정화) 적용 시: 풍량상태, 필터 교체 필요 알림(필터식인 경우), 유해물질 센서 측정 물질명, 센서 측정 물질의 노출정도 - 흡후드 적용 시: 풍량상태, 필터 교체 필요 알림(필터식인 경우), 유해물질 센서 측정 물질명, 센서 측정 물질의 노출정도 3. 컨트롤 디바이스는 각 기기별로 전원제어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제어가 가능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장 : 문잠금/열림 - 전체 또는 국소배기(정화)장치, 흡후드 : 풍량 4. 일반 컴퓨터(클라우드, 프로그램 등)로 상기된 "컨트롤 디바이스"의 성능 및 기능이 가능한 경우, 유해물질 및 위험·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일반 사무실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대체가능

■ 설치 디바이스(1개 이상 필수)

구 성	최소 성능기준
공통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스플레이와 인터페이스는 사업장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보는데 선명하고 불편이 없어야 하며, 디바이스는 사업장 환경 및 노출물질 등을 고려하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보호정도(IP, 방폭 등)와 재질을 갖추어야 함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을 정확하여 외부로 배기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말아야 함 (시약장은 별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덕트는 유해물질의 특성에 따라 내부식성, 내마모성, 내구성 등을 보유한 재질 또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진·흙·미스트 등이 퇴적할 수 없거나 청소 등이 용이한 구조여야 함 국소배기장치, 흡후드의 경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어풍속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인자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최대 풍량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80dB이하 이어야 함.
전체 또는 국소배기 (정화) 디바이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소배기(정화)장치가 우선 설치이나 작업 및 사업장 상태 등 고려하여 전체환기(정화)장치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기관의 의견*을 받아 제출 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의 개선의견 또는 별도의 확인의견서 등 해당 공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중 사업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센서로 물질 농도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숫자 또는 이미지·색상 등 표시 가능)이 가능하고, 위험시 경고 표시(경보음 포함)가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 센서는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약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약 문은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투명 재질로 하되, 물리 및 화학적으로 견고한 내구성을 갖출 것. 디스플레이에 필터 교체여부(필터식인 경우), 시약반출입, 시약현황, 문열림상태, 경고표시 등을 확인 또는 표시할 수 있어야 함. 문잠금/열림 등 시건장치가 설치 또는 기능이 있어야 함. 시약장의 내부의 공기 중의 체류하는 유해인자 등을 정확하여 외부로 배기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말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덕트는 유해물질의 특성에 따라 내부식성, 내마모성, 내구성 등을 보유한 재질 또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진·흙·미스트 등이 퇴적할 수 없거나 청소 등이 용이한 구조여야 함.
흡후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 및 화학적으로 견고한 내구성을 갖출 것. 해당 공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중 사업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센서로 물질 농도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숫자 또는 이미지·색상 등 표시 가능)이 가능하고, 위험시 경고 표시(경보음 포함)가 되어야 함

■ 옵션 (단독지원 불가)

측정센서 디바이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디바이스는 사업장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보호정도 (IP, 방폭 등)와 재질을 갖추어야함 기본 산소, CO 농도와 그 외 사업장 필요 유해물질 센서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 유해가스의 농도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숫자 또는 이미지·색상 등 표시 가능)이 가능하고, 위험시 경고 표시(경보음 포함)가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 센서는 1년 이내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관련 서류 사본 제출)
------------------	---

17-2.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화학물질 노출정보 모니터링)



- **(지원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화학물질 노출정보를 제공하는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을 예방
- **(품목설명)**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감지기로 화학물질 노출수준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된 스마트폰(또는 웨어러블기기) 및 컴퓨터 등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을 경보하는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유해물질 통합안전 관리시스템 (화학물질 모니터링)	<p>1. (신청 시) 아래의 유해물질* 취급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p>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제1호(급성 독성 물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로 MSDS를 통해 확인 가능한 물질</p> <p>* 2차 부산물의 경우 MSDS 대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통해 발생하는 물질이 급성 독성 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이고, 정량적인 결과가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p> <p>- 신청일 기준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상 취급공정 확인</p> <p>2.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와 관리자가 감지기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정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또는 웨어러블기기) 및 관제 컴퓨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p> <p>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p> <p>※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른 기준가격 결정(5건 이상, 최저가격) 가능</p>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성능기준
감지기	<p>1.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것</p> <p>2. 보조금 지급기준의 유해물질 중 사업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측정 센서를 갖추고, 해당 센서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교정성적서가 있을 것</p> <p>※ 보조금 지급기준의 유해물질 외 측정 센서를 추가하여 감지기 구성 가능</p> <p>3.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실시간 감지 및 설정값 이상시 경보</p> <p>- 작업장 소음에서도 위험 경고 등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p> <p>4. 사용장소에 적합한 기기보호등급(IP등급, 방폭 등) 및 전파관련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p>
중계기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장비)	<p>1. 유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및 컴퓨터 등에 정보제공 가능할 것</p> <p>2. 사용장소에 적합한 기기보호등급(IP등급, 방폭 등) 및 전파관련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p> <p>3. (해당 시) 중계기 역할을 하는 웨어러블기기(스마트워치 등)</p> <p>- 해당 기기가 중계기 역할을 하고, 근로자 위험상황 감지 및 경보를 위해 심박수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업무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된 제품(MDM* 적용)이면 보조지원 가능</p> <p>*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원격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기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p> <p>※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웨어러블기기는 보조지원 불가하나 중계기로는 사용 가능</p>
화학물질 노출수준 통합관리 프로그램	<p>1. 스마트폰(또는 웨어러블기기) 및 컴퓨터 화면에서 감지기 작동상태, 화학물질 농도, 이상상황 등에 대한 통합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가능하고 경보(알림) 기능이 있을 것</p>

18.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 (지원목적) 작업 중 끼임·말뭉침 등으로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할 수 없는 경우 비명 등의 음성으로 기계·설비를 정지하고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상해 정도를 경감시켜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기계설비 비상정지장치에 음성인식장치를 연결하여 근로자의 비명 및 음성에 따라 기계설비가 정지하고 경보하는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1. (신청 시) 비상정지장치가 있는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설치 후 작업장 소음에도 정상 작동 확인 시 보조금 지급가능 3. 투자완료확인(요청)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성능기준
디바이스 (음성인식장치, 통합관리 프로그램 등)	1. 지정한 언어* 인식을 통해 연동된 기계·설비를 신속하게 정지하고 경보하는 구조일 것 * '악', '사람살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Help me" 등 2. 음성인식 성능과 관련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을 것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3. 설치 작업장별 소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4. 비상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등에 경보(알림) 기능이 있을 것 5. KC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경보장치	1. 작업장 소음에도 경보는 시각 및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가 가능할 것 2. KC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19.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 (지원목적) 건설현장에 정보통신, 센서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 구조물 붕괴를 사전 감지 및 경보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의 변위 및 가속도 변화를 감지하여 붕괴 등 위험요인 발생 시 주변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경보하는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1. 건설업 본사에 지원 - 건설업 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 2. 투자완료확인(요청)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성능기준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1.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과 연결되어 실시간 변위량(값)을 확인 가능할 것 2. 허용 변위량 초과, 붕괴 위험 등 감지 시 스마트폰 등을 통한 경보 알림과 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경보장치 내장 또는 외부 별도 구성 가능) - 작업 소음에도 위험 경고음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경보음 off 불가) 3. 브라켓, 자석 등의 방법으로 가시설에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고 견고하게 고정될 것 4. 내장 배터리를 통해 최소 15일 이상 작동할 것 5. KC전파인증서 제출 6. 방수방진등급 : IP56 이상

20.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 (지원목적) 근로자가 작업 또는 보행 중 개구부 덮개 열림 또는 개구부 존재 미인지로 인한 추락 사고예방을 위해 정보통신, 센서기술을 활용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근로자의 개구부 접근 또는 개구부 덮개 개방 여부를 감지하여 자체 정보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위험 정보 알림을 주는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닥 개구부 덮개* 열림으로 인한 추락 위험장소 보유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본사가 건설현장 내 탈·부착하면서 사용하려는 경우 또한 지원 가능 * 바닥 개구부 덮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면서 밟아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는 등 반드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함 (건설업 본사의 건설현장 자체 설치 사용 시에도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 - 감지장치는 사업장 내 설치 가능 위험장소 수만큼 지원 가능하며, 건설업 본사의 경우 최대 10개까지 지원 가능 - 건설업 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 2. 투자완료확인(요청)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성능기준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과 연결되어 개구부 덮개의 실시간 개폐 여부를 확인 가능할 것 2. 개구부 덮개 열림 감지 시 스마트폰 등을 통한 경보 알림과 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경보장치 내장 또는 외부 별도 구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구부 덮개 닫힘 시(감지 범위 원위치) 경보 알림 중지 - 작업 소음에도 위험 경고음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경보음 off 불가) 3. 작업자의 개구부 접근 시 직접 또는 작업자 스마트폰 등으로 개구부 존재가 인지될 수 있도록 알림을 줄 것 4. 브라켓, 자석 등의 방법으로 개구부 덮개 등에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고 견고하게 고정될 것 5. 내장 배터리를 통해 최소 15일 이상 작동할 것 6. KC전파인증서 제출 7. 방수방진등급 : IP56 이상

■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 (품목설명) 특정품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하며, 아래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자율신청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 상기 기술·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의 인증·특허가 있는 제품 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국내 특허증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기계 등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기계는 신청사업장 소유일 것 - 산업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위험기계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중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 "자율신청품목"으로 지원불가 제품</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과다 등으로 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아래 사유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공단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지원이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원 불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 서류 및 신청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지원 타당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재해예방 목적보다 공정개선에 주목적이 있는 생산설비로 판단되는 경우 3) 위험제거·대체 등의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4) 기존 제품을 단순 조합하여 구성한 경우 5) 상용화되지 않거나 개발 중인 제품인 경우 6) 지정품목에 해당하지만 지정품목 기준을 충족지 못하는 경우 7) 국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한 인증 또는 특허가 아닌 경우 8) 법적 의무 인증 대상에 해당됨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9) 단순부품, 소프트웨어(어플, 프로그램) 단독, 임차 제품, 소모품, 스마트폰 등 10) 그 외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 </div>

품목명	최소성능기준
자율신청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제품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성능이 있다면 해당하는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 설치 또는 사용 장소가 비, 분진 등이 노출되는 곳으로 이로 인한 제품의 고장·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IP55이상 만족 또는 별도 케이스 설치 등 별도 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55이상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 제출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제출 2. 인공지능(AI) 사용 제품 →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3.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 → KC전파인증을 취득한 제품 4. 산업법에 따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 KCs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설치 시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 완료시까지 인증서 제출 5. 힘을 보조하는 제품 → 근력(힘)을 유지 또는 감소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6. 그 외 법적 의무 인증 해당될 경우 →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증서 제출)

유의사항

- 신청 → 우선선정 → 투자계획확인 → 필수서류 제출 이후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적정” 시 지원가능
-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투자계획확인 후 결정 전까지 신청품목과 동일 모델의 실거래 세금계산서(5건 이상)를 제출하거나,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필요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제품 관련 법적 의무 인증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필요

첨부 3

'25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 ① '24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③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공통적용 항목		최대 70점					
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점	최근 공식통계 상사근로자수 기준				
② 최초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사업장		10점					
③ 사고사망 위험업종		최대 15점	'24년 공식통계 기준 소업종 단위배점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10배수 이상	5~10배수 이내	2~5배수 이내	1~2배수 이내	0.5~1배수 이내		
배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④ 최근 3년간('22 ~ '24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최대 10점	'22~24년 공식통계 기준				
구분	3년			2년	1년		
배점	10점	7점	4점				
⑤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 사업장(위험도 기준)		최대 10점	※ 선정일 기준 저위 위험도 - 공단 빅데이터 활용 고위험 사업장 예측 결과 활용 ※ 위험도를 정도에 따른 점수 부여 - 저위험군(0.0~0.2미만) - 중위험군(0.2~0.8미만) - 고위험군(0.8~1.0)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배점	10점	7점	4점				
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최대 10점	※ 선정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 부여				
구분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80% 이상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0% 초과 20% 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⑦ 고용위기 지역('25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5점					
⑧ 「산단대개조」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5점					
■ 자율활동 우수항목		최대 30점					
⑨ KOSHA-MS 인증 사업장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15점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⑩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10점	각 2점씩 단, 우수항목 중복시 최대 10점으로 한정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정)서 제출 시에만 점수 부여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부여				
* ①노사문화 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NCS 기업활동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 ⑦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⑧기업 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인증), ⑩여름 휴가분산 우수기업							
⑪ 아래의 사업에 참여사업장		5점	'24, '25년도 사업 참여사업장				
①대중소기업 애처보건 상생협력 참여 업체 ②아처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③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세가지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가점) 10점					
⑫ 정부 혁신, 신기술 인증제품		10점	관련 증빙(확인서, 인증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 인정범위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신기술(NET)인증 제품, 환경부 혁신제품,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등							
계		최대 10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②-③-④-⑤-⑥-⑦-⑧)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명	00 가공 산업	평가일시	25. 3. 22.	작성자	김안전
작업공정 (작업내용)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위험성 결정	개 선 대 책	
재로 입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게차운행 중 과적재에 따른 전도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전도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상시 과적재와 전도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철판이 적재불량으로 무너져 근로자 깔림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재대 및 고정장치설치하여 적재 적재 주변을 고려하여 구획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태 유지 	
절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 절단기 수리·점검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근로자 절단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TO 실시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 절단기 주변에 관계자 외 사람이 출입하여 끼임 등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 부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용 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보수·기타 확인을 위해 산업용로봇 근처로 가는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충돌 위험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TO 실시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표지 부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용접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용 로봇 충전부 노출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 덮개 제거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 배치 주회 충전부 노출여부 순회점검 안전보건표지 부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태 유지
적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장크레인으로 가공 철판을 옮기는 도중 근로자와 충돌 및 자재에 깔림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AI) 크레인충돌예방장치를 설치하여 충돌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된 철판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

1. 제공·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구분	(공단) 최소 성능기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설치·제공 장비 사양	적정 여부
카메라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상호 연결가능 - 접이식 사다리 구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이동 및 설치 가능	- 일반 카메라 1대 - 방수방수 등급 IP66 - LTE를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카메라 연결 - 접이식 사다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으로 모니터링 가능 ·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경보 또는 조치 등)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상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AI알고리즘 사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 태블릿에 APP을 통해 실시간 영상 확인 - 작업자가 위험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신속히 인지하여 경고 및 위험설비 정지 · (통합제어장치)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AI영상처리장치(YOLO 알고리즘), 이더넷 통신방식 적용 등 · 한국00협회(KOLAS 인정기관)에서 증명한 AI YOLO 알고리즘을 통한 딥러닝 적용 (인증서 참고) - 위험지역 작업장소 등 설치환경에 맞게 케이스 제작 설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배터리	-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 - 별도의 충전기구를 통해 외부 충전 가능	- 1회 충전 시 60시간 사용 - 어댑터 충전기를 통한 충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보장치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 방수방진등급 : IP66 - 경고등: 광원 LED, 3단계 적용(녹색, 황색, 적색), 점등·점멸 및 황색·적색 시 부저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 “설치·제공 장비 성능” 이 “최소성능기준” 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158조 및 용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투자계획)

사업장명	(주)00종합건설	작성일자	2025. 4. 3.
<p>□ 설치 및 구매 품목명 :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p> <p>○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시스템(주)</p> <p>○ 완료 증빙사진</p>			
사진1		사진2	
사진 제목1		사진 제목2	
사진3		사진4	
사진 제목3		사진 제목4	
사진5		사진6	
사진 제목5		사진 제목6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

1. 제공·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구분	(공단) 최소 성능기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설치·제공 장비 사양	적정 여부
<i>카메라</i>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상호 연결가능 - 접이식 사다리 구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이동 및 설치 가능	- 일반 카메라 1대 - 방수방진 등급 IP66 - LTE를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카메라 연결 - 접이식 사다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i>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i>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으로 모니터링 가능 ·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경보 또는 조치 등)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상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AI알고리즘 사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 태블릿에 APP을 통해 실시간 영상 확인 - 작업자가 위험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신속히 인지하여 경고 및 위험설비 정지 · (통합제어장치)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AI영상처리장치(YOLO 알고리즘), 이더넷 통신방식 적용 등 · 한국00협회(KOLAS 인정기관)에서 증명한 AI YOLO 알고리즘을 통한 딥러닝 적용 (인증서 참고) - 위험지역 작업장소 등 설치환경에 맞게 케이스 제작 설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배터리</i>	-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 - 별도의 충전기구를 통해 외부 충전 가능	- 1회 충전 시 60시간 사용 - 어댑터 충전기를 통한 충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경보장치</i>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 방수방진등급 : IP66 - 경고등: 광원 LED, 3단계 적용(녹색, 황색, 적색), 점등점멸 및 황색적색 시 부저 기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 “설치·제공 장비 성능” 이 “최소성능기준” 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158조 및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종합건설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1. 지급대상사업장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아래에 법적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대상사업장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 (공 통) 근로자 대표*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의 설치를 동의하였으며, 설치 주변 잘 보이는 장소에 "시설안전(산업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으로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였음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부착하여 공지하였음.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구성 하고, 제20조 1항 14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따라 해당 스마트 안전 장비()의 설치를 협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음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지급대상사업장명 :

사업주 :

(서명)

근로자대표 :

(서명)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해당사항에 √ 하시고,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조사 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조사	수시조사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시 <input type="checkbox"/>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 조사 일시		● 조사 자
● 부서 명		
● 작업공정명		
● 작업 명		

가. 작업장 상황 조사

● 작업 설비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화 있음(언제부터)
● 작업 량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줄음(언제부터) <input type="checkbox"/> 늘어남(언제부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작업 속도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줄음(언제부터) <input type="checkbox"/> 늘어남(언제부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업무 변화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줄음(언제부터) <input type="checkbox"/> 늘어남(언제부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나. 작업조건 조사

1단계 : 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유해요인 조사자)

직종명(Job Title) :

작업내용(Tasks) :

2단계 :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작업 부하(A)	점수	작업 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아주 가끔(2개월마다 1~2회)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2~3일)	2
약간 힘들	3	자주(1일 4시간)	3
힘들	4	계속(1일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들	5	초과근무 시간(1일 8시간 이상)	5

작업내용	작업 부하(A)	작업 빈도(B)	총점수(A×B)

3 단계 : 유해요인 및 원인 평가서

작 종 명																																												
<p><유해요인 설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5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adding: 20px;"> <작업1 사진 또는 그림 첨부> </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adding: 20px;"> <작업2 사진 또는 그림첨부> </td> </tr> </table>			<작업1 사진 또는 그림 첨부>	<작업2 사진 또는 그림첨부>																																								
<작업1 사진 또는 그림 첨부>	<작업2 사진 또는 그림첨부>																																											
<p>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35%;">유해요인</th> <th style="width: 45%;">유해요인에 대한 원인</th> <th style="width: 20%;">총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작업내용1> _____ </td> <td></td> <td></td> </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 <td style="padding: 5px;"> <작업내용2> _____ </td> <td></td> <td></td> </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body> </table>			유해요인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	총점수	<작업내용1> _____																					<작업내용2> _____																	
유해요인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	총점수																																										
<작업내용1> _____																																												
<작업내용2> _____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지급 사업주는 지급요청에 앞서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련 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투자완료)

사업장명	(주)△△산업	작성일자	2025. 7. 3.
<input type="checkbox"/> 설치 및 구매 품목명 :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시스템(주) <input type="checkbox"/> 완료 증빙사진			
사진1		사진2	
사진 제목1		사진 제목2	
사진3		사진4	
사진 제목3		사진 제목4	
사진5		사진6	
사진 제목5		사진 제목6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신청서는 단가(제품) 또는 1식(공사 등)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신청품목

품목(제품)명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안전보건기준 등 관련 근거	예)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신기술 적용 여부(해당 항목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인공지능 (AI기술)	<input type="checkbox"/> 로봇공학 (로봇적용)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 (ICT기술)	<input type="checkbox"/> 사물인터넷 (IoT적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센서기술 (데이터제어)

■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특허 취득 여부(반드시 1개 이상 체크√)

구분	해당여부(√)	제출서류
() 혁신제품	<input type="checkbox"/>	인증서 등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input type="checkbox"/>	
(중소벤처기업부) 신기술(NET 등)인증 제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외 국가 및 정부기관 등 인증·특허 제품 ()	<input type="checkbox"/>	

■ 신청(견적)금액 : (2,500)천원

- 붙임 : 1.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부.
2. 신기술 적용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1부.
3.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제품 인증서 사본 1부.
4. 견적서 1부.
5. 제품사진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카달로그, 설명서 등) 1부.

2025년 0월 00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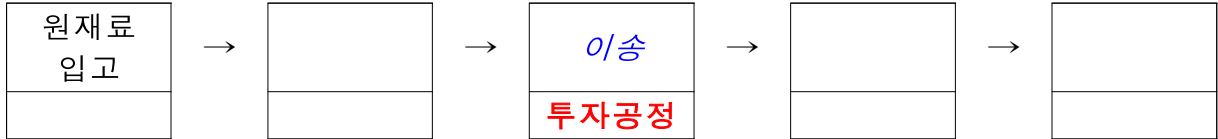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 사업장 현황

○ 공정흐름도



○ 생산품 또는 작업내용(2줄 내외로 간략히 작성)

- (예) 무인운반차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화장품 박스 적재 장소로 이송

2.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필요성(현실태 및 유해·위험요인 포함)

- (예) 보유하고 있는 무인운반차에 경고장치(경광등, 부저) 및 센서가 미부착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음.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를 도입하여 무인운반차 근처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경고장치로 알려 위험 경고를 알리고, 서행·정지하여 부딪힘을 예방하고자 함

3.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 위험성평가 점검표

○ 투자 공정명 : 이송작업

재해유형				현실태 및 위험요인	확인결과		개선방안
끼임	떨어짐	부딪힘	기타		적정	보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위험지역 접근에 따른 위험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 장치를 도입하여 부딪힘 예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유해위험물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불시기동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위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설물 등 이상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인화성 물질 취급공정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유해가스 취급 발생 공정으로 인한 질식, 건강장해 등의 위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 장해 위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타 위험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에 대해서만 작성

※ 끼임, 떨어짐, 부딪침 위험 외 기타 재해유형의 경우, 추가 작성

4. 투자대상 공정 또는 교체설비 및 현장전경

투자대상공정	현장 전경
설비 사진1	설비 사진2
설비 사진3	설비 사진4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자율품목]

1. 제공·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신청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 상기 기술·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의 인증·특허가 있는 제품
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KCs안전인증(로봇), 국내 특허증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기계는 신청사업장 소유일 것
- 산업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위험기계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중일 것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최소성능기준

○ 대상제품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성능이 있다면 해당하는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제품 설치 또는 사용 장소가 비, 분진 등이 노출되는 곳으로 이로 인한 제품의 고장·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IP55이상 만족 또는 별도 케이스 설치 등 별도 조치 필요
※ IP55이상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 제출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제출
2. 인공지능(AI) 사용 제품 →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3.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 → KC전파인증을 취득한 제품
4. 산업법에 따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 KCs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 단, 설치 시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시까지 인증서 제출
5. 힘을 보조하는 제품 → 근력(힘)을 유지 또는 감소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6. 그 외 법적 의무 인증 해당될 경우 →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증서 제출)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 “설치·제공 장비 성능” 이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 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158조 및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종합건설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으로 적용
 ※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5.9.30.(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보험기간: '25.9.19. ~ '29.9.18.
-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122-82-04898 안전보건공단
보험가입금액	[] W []	보험료	[]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5년 9월 19일부터 2029년 9월 18일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자 [] 계약금액 [] 공헌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2025년 9월 19일부터 2029년 9월 18일까지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로 적용
 -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5.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5.6.16. 경우 '25.6.16. + 3년 2개월 => '25.6.16. ~ '28.8.15.
 -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25.6.2. 발행 시 '25.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5.6.2. ~ '28.8.1.
-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
-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h3 style="margin: 0;">하자보증보험증권</h3> <p style="margin: 0;">(인터넷 발급용)</p>			
증권번호	계 []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납
보험기간	2025년 6월 16일부터 2028년 8월 15일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 담보기간 [] 계약세금일자 [] 계약금액 [] 보증금율 30%		